정보통신부고시제2002-28호

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2**년** 5 **월**16**일**
정보통신부장관

형식검정을받아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

1. **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**

부 칙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